

양식장기본도의 작성방법(제3조제3항 관련)

1. 양식장기본도의 양식장의 구획표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 - 가. 양식장기본도에는 이미 면허된 양식장의 구획, 양식업의 종류, 시설방법, 면허번호 및 양식장의 면적을 표시한다.
 - 나. 양식장기본도에는 동·리의 명칭과 양식장에 인접한 특정 물체의 고유명칭을 같이 표기하고, 개발하려는 양식장의 해상 구역을 측량을 통해 획정한 후 각 꼭지점의 좌표를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직각좌표값으로 표기한다. 이 경우 측량에 사용된 육상의 측지기준점을 도면상에 같이 표기한다.
2. 기존 양식장과 개발하려는 양식장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되, 기존 양식장의 구획선은 실선으로, 개발하려는 양식장의 구획선은 점선으로 표시한다.
 - 가. 해조류양식장: 주황색
 - 나. 패류양식장: 황색
 - 다. 어류등양식장: 녹색
 - 라. 복합양식장: 청색
 - 마. 협동양식장: 남색
3. 양식장 간의 거리와 양식장 구역의 획정은 다음에 따른다.
 - 가. 조수로 등을 고려하고 양식장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어업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규제되는 수면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.
 - 나. 양식장 구역은 별표 3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에 따라 구획하되, 양식장의 수심, 양식장 구역의 한계, 양식장 간의 거리 등 양식장의 시설기준을 고려해야 한다.